

# 홋카이도 코로나19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

---

2021년 6월 18일

## 실시내용

국가에 의한 코로나19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의 적용에 의거하여 삿포로시를 조치구역으로 지정하고 사람간 접촉 기회를 줄이기 위해 신형 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 제31조의 6 및 동법 제24조 제9항에 따라 도민 등을 대상으로 협력요청을 하는 동시에, 필요한 협력에 대한 조치를 실시한다.

또한, 감염 재확산이 보일 경우에는, 조속히 효과적인 강력한 감염대책 등을 강구한다.

## 조치구역

### 삿포로시

※ 그 밖의 시정촌에서는 철저한 감염 리스크를 회피하는 행동의 촉진 등을 위해 동법 제24조제9항에 따른 요청 등을 실시한다.

※ 기타 시정촌 중 특히 긴급사태조치에 의해 특정조치구역으로 지정되었던 에베쓰시, 치토세시, 에니와시, 기타히로시마시, 이시카리시, 도베쓰초, 신시노쓰무라, 오타루시 및 아사히카와시(경과구역)에 대해서는 단계적 완화의 관점에서 감염방지대책을 더욱 철저히 시행하도록 촉구한다.

## 기 간

2021년 6월 21일 (월) ~ 7월 11일 (일)

조치구역

기 간

6월 21일 (월) ~ 7월 11일 (일)

요청내용

- (외출할 때는)
- ◆ **낮시간을 포함하여 불필요한※외출이나 이동을 삼간다. 특히 주말 외출을 삼간다.**  
(특조법제24조제9항)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 통원, 식료품·의료품·생활필수품의 구입, 필요한 직장출근, 옥외에서의 운동이나 산책 등, 생활이나 건강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 외출을 삼가주십시오. 아울러, 필요한 외출이나 이동이더라도 혼잡한 장소나 시간을 피해 행동해 주십시오.
  - ◆ **중증화 위험이 높은 분※과 접촉하는 경우에는, 위험회피행동을 철저히 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고령자, 기초질환이 있으신 분, 일부의 임신후기이신 분
  - ◆ **불필요한 도도부현간의 이동, 특히「긴급사태조치구역」 및 「만연방지등 중점조치구역」과의 왕래는 엄히 삼간다.** (특조법제24조제9항)  
(홋카이도 이외 지역으로의 이동이 아무래도 피할 수 없는 경우는, 감염 방지책을 철저히 하는 것 이외에도 체온 체크나 필요에 따라서 PCR 검사를 받는 등, 몸상태 확인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음식을 섭취할 때는)
- ◆ **20시이후, 음식점 등을 함부로 출입하지 않는다.** (특조법제31의 6 제2항)
  - ◆ **감염방지 대책이 철저히 않은 음식점 등이나 영업시간 단축 요청에 응하고 있지 않는 음식점 등의 이용을 삼간다.** (특조법제24조 제9항)
  - ◆ **길거리·공원 등에서의 집단음주 등 감염위험이 높은 행동을 삼간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 **가능한 한 동거하고 있지 않는 분과의 음식섭취를 삼간다. 음식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식사는 4인 이내 등 소수인원으로, 단시간에, 과음하지 않고 큰 소리를 내지 않으며 대화시에는 마스크 착용 (「침묵식사 ~ 식사는 조용히, 대화는 마스크~」의 실천)** (특조법제24조제9항)

【음식점 등에 대한 요청】

기 간

6월 21일 (월) ~ 7월 11일 (일)

대상시설

[음식점] 음식점(주점 포함), 카페 등 (배달·테이크아웃 제외)  
 [유흥시설] 카바레, 노래방 등에서 식품위생법상 음식점영업허가를 받은 점포  
 [결혼식장] 식품위생법상 음식점영업허가를 받은 결혼식장

요청내용

- ◆ 영업시간은 5시부터 20시까지 (특조법제31조의6제1항)
- ◆ 주류제공(이용자에 의한 주류 점내반입 포함)은, 일정의 조건※을 만족한 점포에 대해서는 11시부터 19시까지 가능하도록 하며,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점포에 대해서는 주류제공을 하지 않는다. (특조법제31조의6제1항)
  - ※ 일행의 입점은 원칙적으로 4명 이내, 아크릴판 등의 설치(좌석 간격 확보), 손 소독의 철저, 식사 중 이외 마스크 착용의 권장, 환기 철저, 코로나19 접촉 확인 앱(COCOA) 및 홋카이도 코로나 통지 시스템의 활용 안내, 체재시간의 제한(2시간 정도를 기준) 등에 의해 동시에 다수의 사람이 모이지 않도록 한다, 점내에서는 큰 소리로 대화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킨다(침묵식사 ~ 식사는 조용히, 대화는 마스크 ~ 의 실천), 업무 개시 전에 체온을 재는 등 종업원의 몸 상태를 확인한다.
- ◆ 다음의 감염방지대책을 실시한다. (특조법제31조의6제1항)
  - 종원들의 검사 장려   ·입장자의 정리·유도
  - 발열, 기타 증상이 있는 사람의 입장금지
  - 손 소독 설비의 설치   ·사업장 소독
  - 마스크 착용 및 기타 감염 방지에 관한 조치의 주지
  - 정당한 이유없이 마스크 착용 등의 감염방지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자의 입장금지(이미 입장한 사람의 퇴장 포함)
  - 시설 환기
  - 아크릴판 등의 설치 또는 이용자의 적절한 거리 확보 등 비말감염방지에 효과가 있는 조치 강구
- ◆ 음식제공이 주된 영업인 점포등에서는 노래방 설비를 이용하지 않는다. (특조법제31조의6제1항)
- ◆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요청에 협력해 주신 사업자에게는 지원금 지급

【음식점 등에 대한 협력금의 도 기준액 산정】

중소기업·개인사업자: 각 점포에 대해 하루당 매출액에 따라 3만엔 ~ 10만엔    대기업: 각 점포에 대해 하루당 매출의 감소액에 따라 최대 20만엔

## 【이벤트의 개최에 대한 요청 · 협력의뢰】

기 간

6월 21일 (월) ~ 7월 11일 (일)

※ 6월 20일까지 판매된 것에 한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티켓은 취소하지 않아도 된다. 6월 21일 이후, 다음의 기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티켓의 신규판매를 중지할 것. (7월 12일 이후도 동일)

인원수  
상한 및  
수용률  
(※1)

○ 인원수 상한

5,000명

○ 수용률

[100% 이내] 큰 소리로의 환호 · 성원 등이 없음을 전제로 할 수 있는 경우 (※2)

[ 50% 이내] 큰 소리로의 환호 · 성원 등이 상정되는 경우 (※3)

※ 감염예방이 철저하지 않은 경우는 무관객·온라인송신으로의 개최와 더불어, 연기 또는 중지를 검토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1 수용률과 인원수 상한 중 어느 쪽이든 작은 쪽을 한도로 한다 (양쪽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함)

※2 클래식 음악 콘서트, 연극 등, 무용, 전통예능, 예능·연예, 공연·식전, 전시회 등, 음식섭취를 수반하는 발성이 없는 행사(행사 중 식사를 수반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감염 방지책이 담보되고 이벤트 중에 발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 「큰 소리로의 환호 · 성원 등이 없음을 전제로 할 수 있는 경우」로 취급할 수 있다.)

※3 록, 팝콘서트, 스포츠 이벤트, 공연경기, 공연, 라이브하우스·나이트클럽에서의 이벤트 등 (다른 그룹 간에는 좌석을 1석씩 비우고, 동일그룹 (5명 이내에 한함) 내에서는 좌석간격을 두지 않아도 됨, 즉 수용률은 50%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음)

요청내용

- ◆ 영업시간은 21시까지 (무관객으로 개최되는 행사 제외) (특조법제24조제9항)
- ◆ 감염방지대책이 철저하지 않은 경우, 주류 제공 (이용자에 의한 주류 점내 반입 포함) 을 하지 않는다 (협력의뢰)
- ◆ 이벤트 개최에 대해서는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 행사 전후의 3밀 및 음식섭취를 방지하는 조치 철저 (특조법제24조제9항)
- ◆ 국가의 접촉확인 앱 (COCOA) 도입, 명부작성 등 추적대책 철저 (특조법제24조제9항)
- ◆ 전국적 이동을 수반하는 행사 혹은 참가자가 1,000명을 넘는 행사의 실시에 대해서는 개최요건 등에 관하여 도에 사전상담을 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사업자에게 드리는 요청 · 협력의뢰】

기 간

6월 21일 (월) ~ 7월 11일 (일)

요청·  
협력의뢰  
내용

- ◆ 직장출근 등에 대해서 「출근자수의 **70% 감소**」를 목표로 하는 것과 더불어 사람간 접촉기회를 줄이기 위해 재택근무 (텔레워크) 나 출근이 필요한 직장에서도 로테이션 근무등을 철저히 한다. (협력의뢰)
- ◆ 사업의 지속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20시** 이후의 근무를 억제한다. (협력의뢰)
- ◆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 휴식 장소나 식사 장소 등 직장에서 감염 위험이 높은 장소를 재점검하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 주요 관광시설 등의 라이트업이나 번화가의 옥외광고 등에 대해서 **20시** 이후, 야간 소등한다. (협력 의뢰)
- ◆ 시영교통 (지하철 · 노면전차) 에 대한 막차 단축운행이나 주요 터미널 (오도리역, 삿포로역) 에서의 체온검사를 실시한다 (협력의뢰)
- ◆ 다른 교통 사업자에 대해서도 마지막 운행편의 단축 등의 대응을 검토한다 (협력의뢰)

기 간

6월 21일 (월) ~ 7월 11일 (일)

요청내용

- ◆ 위생관리 매뉴얼 (2021.4.28 개정) 에 따라 학교교육 활동, 학생기숙사에 대한 감염방지 대책 실시를 철저히 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 아동·학생과 동거 가족의 감염 상황을 즉시 파악하여, 학급·학년·전교에서의 신속하고 폭넓은 휴교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이 경우, 온라인 학습 등에 의해 학습을 보장하는 동시에 집에 있는 것이 곤란한 아동의 거처를 확보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 학교행사 (운동회, 체육제, 수학여행, 숙박학습 등) 를 중지, 연기, 축소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 고등학교 및 특별지원학교에서는 통근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차통학을 실시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 동아리 활동은 원칙적으로 중지하고 전국·전도 대회 등으로 이어지는 활동에 한정하도록 하며 건강 상태의 다중 체크와 더불어 코로나19대책의 전교 지도체제를 확립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 대학, 전문학교등에서는 온라인 수업의 활용이나 학급 분할수업 등의 실시로 3밀을 회피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공립시설

◆ 도립시설 및 시립시설은 원칙상 휴관하도록 한다.



【음식점 등 이외의 시설에 대한 요청·협력의뢰①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하는 시설】

기간

6월 21일 (월) ~ 7월 11일 (일)

요청·협력의뢰 내용

시설 종류	내역	요청·협력의뢰내용	
		1,000㎡초과	1,000㎡이하
상업시설	대규모소매점, 쇼핑센터, 백화점 등의 물품판매업을 운영하는 점포 (생활필수물자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시간은 <b>20시</b>까지로 한다 (특조법제<b>24조제9항</b>)</li> <li>※대규모 소매점, 쇼핑센터, 백화점 등 물품판매업을 운영하는 점포 중, 생활필수물자를 제외한다</li> <li>◆ 감염방지대책이 철저하지 않은 경우, 주류 제공 (이용자에 의한 주류의 점내 반입 포함) 및 노래방 설비의 이용을 실시하지 않음. (협력의뢰)</li> <li>◆ 입장자의 정리유도 등을 철저히 한다 (특조법 제<b>24조9항</b>)</li> <li>◆ 정리유도 등의 상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널리 알린다. (협력의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시간은<b>20시</b>까지로 한다. (협력의뢰)</li> <li>※대규모 소매점, 쇼핑센터, 백화점 등 물품판매업을 운영하는 점포 중, 생활필수물자를 제외한다</li> <li>◆ 감염방지대책이 철저하지 않은 경우, 주류 제공 (이용자에 의한 주류의 점내 반입 포함) 및 노래방 설비의 이용을 실시하지 않음. (협력의뢰)</li> <li>◆ 입장자의 정리유도 등을 철저히 한다 (특조법 제<b>24조9항</b>)</li> <li>◆ 정리유도 등의 상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널리 알린다. (협력의뢰)</li> </ul>
유기시설	파칭코점, 게임센터 등		
유흥시설	성풍속점, 경마투표권발매소, 장외경마(경차·경정)권발매장 등		
서비스업	대중목욕탕, 피부관리실 등의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점포 (생활필수서비스는 제외)		

※ 1,000㎡를 넘는 시설에 대하여 특조법에 의거한 영업시간 단축 요청 등에 협력해 주신 사업자에게는 지원금을 지급 (다른 지원 메뉴가 있을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규모시설에 대한 협력금의 도 기준액 산정】

대규모시설 1일당 20만엔 × 면적 / 1,000㎡ × 영업시간단축비율(※) × 영업시간단축일수  
 임차인 1일당 2만엔 × 면적 / 100㎡ × 영업시간단축비율(※) × 영업시간단축일수  
 ※ 영업시간에서 차지하는 영업단축시간의 시간 비율

【음식점 등 이외의 시설에 대한 요청·협력의뢰②이벤트에 준한 조치를 요청하는 시설】

기간 6월 21일 (월) ~ 7월 11일 (일)

요청·협력의뢰 내용	시설의 종류	내역	요청·협력의뢰내용
	극장 등	극장, 관람장, 영화관, 공연장, 플라네타륨 천문관 등	◆ 인원수 상한 5000명, 동시에 수용률 100% 이내(큰소리 없음), 50%이내(큰소리 있음)(특조법제24조제9항)
	집회·전시시설	집회장, 공회당, 전시장, 대여 회의실, 문화회관 등	◆ (1,000㎡ 초과 시설) 20시까지의 영업시간 단축 (이벤트 개최의 경우는 21시까지) (특조법 제24조제9항)
	호텔·여관	호텔, 여관(집회용으로 제공하는 부분에 한함)	◆ (1,000㎡ 이하 시설) 20시까지의 영업시간 단축 (이벤트 개최의 경우는 21시까지) (협력의뢰)
	운동시설, 유기시설	야구장, 육상경기장, 스포츠클럽, 테마파크, 유원지 등	◆ 입장자의 정리유도 등을 철저히 한다 (특조법 제24조제9항) ◆ 정리유도 등의 상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널리 알린다 (협력의뢰)
	박물관 등	박물관, 미술관 등	◆ 감염방지대책이 철저히 하지 않은 경우, 주류 제공 (이용자에 의한 주류의 점내반입 포함) 및 노래방 설비의 이용을 실시하지 않는다 (협력의뢰) ◆ 영화관에 대해서는 (1,000㎡ 초과 시설) 21시까지의 영업시간단축 (특조법제24조제9항) (1,000㎡ 이하 시설) 21시까지의 영업시간단축 (협력의뢰)

※ 1,000㎡ 를 넘는 시설에 대하여 특조법에 의거한 영업시간 단축 요청 등에 협력해 주신 사업자에게는 지원금을 지급 (다른 지원 메뉴가 있을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규모시설 (1,000㎡초과) 에 대한 협력금의 도 기준액 산정】  
 대규모시설 1일당 20만엔 × 면적 / 1,000㎡ × 영업시간단축비율(※) × 영업시간단축일수 임차인 1일당 2만엔 × 면적 / 100㎡ × 영업시간단축비율(※) × 영업시간단축일수  
 ※ 영업시간에서 차지하는 영업단축시간의 시간 비율

그 이외의 시정촌

기 간

6월 21일 (월) ~ 7월 11일 (일)

요청내용

(외출할 때는)

◆ 감염위험을 회피할 수 없는 경우, 불필요※한 외출이나 이동을 삼간다.

(특조법제24조제9항)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 통원, 식료품·의료품·생활필수품의 구입, 필요한 직장출근, 옥외에서의 운동이나 산책 등, 생활이나 건강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출을 삼가주십시오. 아울러, 필요한 외출이나 이동이더라도 혼잡한 장소나 시간을 피해 행동해 주십시오.

◆ 중증화 위험이 높은 분※과 접촉하는 경우, 위험회피 행동을 철저히 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고령자, 기초질환이 있는 분, 일부의 임신후기인 분

◆ 삿포로시와의 불필요한 왕래를 삼간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불필요한 도도부현간의 이동, 특히「긴급사태조치구역」및「만연방지 등 중점조치구역」과의 왕래는 엄히 삼간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홋카이도 이외 지역으로의 이동이 아무래도 피할 수 없는 경우는, 감염 방지책을 철저히 하는 것 외에 체온 체크나 필요에 따라서 PCR 검사를 받는 등, 몸상태 확인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섭취할 때는)

◆ 감염방지 대책이 철저하지 않은 음식점 등이나 영업시간 단축 요청에 응하고 있지 않는 음식점 등의 이용을 삼간다. (특조법제24조 제9항)

◆ 식사는 4명 이내 등 소수인원으로, 단시간에, 과음하지 않고 큰 소리를 내지 않으며 대화시에는 마스크 착용 (「침묵식사 ~ 식사는 조용히, 대화는 마스크~」의 실시) (특조법제24조제9항)

◆ 길거리·공원 등에서의 집단 음주 등 감염 위험이 높은 행동을 삼간다.

(특조법 제24조제9항)

## 【음식점 등에 대한 요청·협력의뢰】

대상지역	에베쓰시, 치토세시, 에니와시, 기타히로시마시, 이시카리시, 도베쓰시, 신시노쓰무라, 오타루시, 아사히카와시
기간	6월 21일 (월) ~ 7월 11일 (일)
대상시설	<p>[음식점] 음식점(주점 포함), 카페 등 (배달·테이크아웃 제외)</p> <p>[유흥시설] 카바레, 노래방등에서 음식위생법상 음식점영업허가를 받고 있는 점포</p> <p>[결혼식장] 식품위생법상 음식점영업허가를 받고 있는 결혼식장</p>
요청·협력의뢰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시간은, 5시부터 21시까지 (특조법제24조제9항)</li> <li>◆ 주류의 제공 (이용자에 의한 주류 점내 반입을 포함) 은 11시부터 20시까지 (특조법제24조제9항)</li> <li>◆ 다음의 감염방지대책을 실시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원원들의 검사 장려    ·입장자의 정리·유도    ·발열, 기타 증상이 있는 사람의 입장금지</li> <li>·손 소독 설비의 설치    ·사업장 소독    ·마스크 착용 및 기타 감염 방지에 관한 조치의 주지</li> <li>·정당한 이유없이 마스크 착용 등의 감염방지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자의 입장금지(이미 입장한 사람의 퇴장 포함)</li> <li>·시설 환기 실시    ·아크릴판 등의 설치 또는 이용자의 적절한 거리 확보 등 비말감염방지에 효과가 있는 조치 강구 (이하, 협력의뢰)</li> <li>·동일 그룹의 입점은 원칙적으로 4인 이내,</li> <li>·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접촉 확인 앱(COCOA) 및 훗카이도 코로나 통지 시스템의 활용 안내,</li> <li>·체재시간의 제한(2시간 정도를 기준) 등에 의해 동시에 다수의 사람이 모이지 않도록 한다,</li> <li>·가게 안에서는 큰 소리로 대화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킨다(침묵식사~식사는 조용히, 대화는 마스크~의 실천)</li> </ul> </li> <li>◆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엄수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li> <li>◆ 음식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점포 등에 대해서, 노래방 설비를 이용하지 않는다. (특조법제24조제9항)</li> </ul>
	<p>※ 요청에 협력해 주신 사업자에게는 지원금을 지급</p>

## 【음식점 등에 대한 협력금의 도 기준액 산정】

중소기업·개인사업자: 1점포당 하루당 매출액에 따라 2.5만엔 ~ 7.5만엔    대기업: 1점포당 하루당 매출액 감소액에 따라 최대 20만엔

## 【이벤트 개최에 대한 요청】

기 간

6월 21일 (월) ~ 7월 11일 (일)

※ 6월 20일까지 판매된 것에 한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티켓은 취소하지 않아도 된다. 6월 21일 이후, 다음의 기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티켓의 신규판매를 중지할 것 (7월 12일 이후도 동일)

인원수  
상한 및  
수용률  
(※1)

○ 인원수 상한(어느쪽이든 큰 쪽)

5,000명 또는 수용인수 50% 이내 (10,000명 이내)

특조법제24조제9항

○ 수용률

[100%이내] 큰 소리로의 환호·성원 등이 없음을 전제로 할 수 있는 경우 (※2)

[ 50%이내] 큰 소리로의 환호·성원 등이 상정되는 경우 (※3)

※ 감염예방이 철저하지 않는 경우는 무관객·온라인송신으로의 개최에 더하여,  
연기 또는 중지를 검토한다.

※1 인원수 상한과 수용률 중 어느 쪽이든 작은 쪽을 한도(양쪽의 조건을 만족시킬 필요)

※2 클래식 음악 콘서트, 연극 등, 무용, 전통예능, 예능·연예, 공연·식전, 전시회 등, 음식을 수반하는 발성이 없는 행사(행사 중 식사를 수반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감염 방지책이 담보되고 이벤트 중에 발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 「큰 소리로의 환호·성원 등이 없음을 전제로 할 수 있는 경우」로 취급할 수 있다.)

※3 록, 팝콘서트, 스포츠 이벤트, 공연경기, 공연, 라이브하우스·나이트클럽에서의 이벤트 등(다른 그룹 간에는 좌석을 1석씩 비우고, 동일그룹(5명 이내에 한함) 내에서는 좌석간격을 두지 않아도 됨, 즉 수용률은 50%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음)

要請内容

◆ 이벤트개최에 대해서는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행사 전후의 3밀 및 음식섭취를 방지하는 조치 철저 (특조법제24조제9항)

◆ 국가의 접종확인 앱(COCOA) 도입·명부 작성 등 추적대책을 철저 (특조법제24조제9항)

◆ 전국적 이동을 수반하는 행사 혹은 참가자가 1,000명을 넘는 이벤트의 실시  
대해서는 개최요건 등에 관하여 도에 사전상담을 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이벤트 관련 시설 및 이벤트를 개최하는 경우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운영 시  
이벤트 개최 여부에 관계없이 인원수 상한, 수용률 등의 내용을 준수한다. (협력 의뢰)

## 【 사업자에게 드리는 요청 · 협력의뢰 】

기 간

6월 21일 (월) ~ 7월 11일 (일)

요청·  
협력의뢰  
내용

- ◆ 직장 출근 등에 대하여 「출근자수의 **70% 감소**」를 목표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람간 접촉기회를 줄이기 위한 재택근무 (텔레워크) 나 출근이 필요한 직장에서도 로테이션 근무 등을 철저히 한다. (협조의뢰)
- ◆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 특히 경과구역에서는 입장정리 등 감염방지대책을 한층 더 철저히 한다. (협력의뢰)
- ◆ 휴식 장소나 식사 장소 등 직장에서 감염 위험이 높은 장소를 재점검하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 감염방지대책이 철저히 하지 않은 경우, 노래방 설비를 제공하지 않는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학교에 드리는 요청】

## 기 간

6월 21일 (월) ~ 7월 11일 (일)

## 요청내용

- ◆ 위생관리 매뉴얼 (2021.4.28 개정) 에 따라 학교교육 활동, 학생기숙사에 대한 감염방지 대책을 철저히 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 아동·학생과 동거 가족의 감염 상황을 즉시 파악하여, 학급·학년·전교에서의 신속하고 폭넓은 휴교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이 경우, 온라인 학습 등에 의해 학습을 보장하는 동시에 집에 있는 것이 곤란한 아동의 거처를 확보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 동아리 활동은, 활동을 엄선 (시간, 인원수, 장소 등) 하여 감염증 대책을 철저히 한 후 실시 하고, 이러한 대책이 어려운 경우는 중지한다. 또한, 건강상태 다중체크를 함과 동시에 감염증 대책의 전교 지도체제를 확립한다. (특조법 제24조제9항)
- ◆ 대학, 전문학교에서는 온라인 수업의 활용이나 학급분할 수업 등의 실시에 의해 밀접접촉을 방지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공립시설

- ◆ 감염방지대책을 철저히 한다. 특히 경과구역에서는 입장정리 등 감염방지 대책을 한층 더 철저히 한다. (협력의뢰)